

# 생명공학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

## (박영순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6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6.

발의자 : 박영순 · 박정 · 윤영덕

김교홍 · 최인호 · 임호선

조정식 · 김종민 · 양경숙

이용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· 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·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정책전문기관(이하 정책센터)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정책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책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생명공학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).



## 생명공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명공학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지정과”를 “지정·지정취소와”로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센터로 지정받은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책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· ②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4조(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센터로 지정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책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<u>⑤ ----- 지정 · 지정취소와 ----- -----.</u></p>
<p><u>③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</u></p>	